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8. 8 . . (제 회)	

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문화누리관장)
제출 연월일	2018. 8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8. 8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제정이유

-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·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장난감도서관의 기능(안 제4조)
- 다. 위탁운영(안 제8조)

3. 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결과 : 2018. 7. 25. ~ 2018. 8. 14. / 접수된 의견 없음
- 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바. 기타관련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·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·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대여 자료”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·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.
3. “일반회원”이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.
4. “시설회원”이란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으로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장소) ①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영유아 장난감·도서·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
2.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여
3.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

제5조(회원의 의무)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장난감도서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
제6조(연회비)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,000원, 시설회원 50,000원으로 한다.

③ 회원이 이사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.

제7조(연회비 면제)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~3급 등록 장애인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5. 3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
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8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탁운영자의 성명(법인·단체명)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
4.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

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,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운영자 선정) 군수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.

제11조(위탁의 해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
2.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3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2조(지도·감독 등)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조금의 환수)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3. 법령,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누리관	
연 락 처	054-950-6208